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부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요 및 성폭력”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학교폭력문제”를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1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제7항 전단 중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를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을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을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라”를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제17조제2항 중 “제6호까지 및 제8호의”를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해당 조치를”를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위탁”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가해학생·피해학생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피해학생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자료에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하여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 사.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 아.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필요시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 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 차.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8항).

- 카.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타.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 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권재진
법무부장관

● **법률 제1122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입국관리”를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인승객의 여권
2. 외국인승객의 명부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관광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관광상륙허가”로, “외국인승무원”은 “외국인승객”으로 본다.